

수용재결 신청서 열람공고

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사업시행자-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**낙동강살리기 36공구<13차> 사업**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 신청이 있어 재결신청 관계서류를「**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**」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.

2012년 03월 12일

예 천 군



1. 사업의 명칭 : **낙동강살리기 36공구<13차>**
2. 사업시행자의 명칭 : 부산지방국토관리청
3. 수용 및 사용할 토지의 내역 : “붙임과 같음”
4. 열람공고기간 : **2012. 03. 12 ~ 2012. 03. 27.**
5. 열람장소 및 의견서 제출처 : 경상북도 예천군 재난관리과
6. 공고내용

가.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낙동강살리기 36공구<13차> 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토지수용재결신청서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 되었음을 알려드리며,

나.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열람공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공고 게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우편 제출 시 2012. 03. 29. 도착분에 한함)

7. 기타문의 사항은 부산관리국토관리청 보상대행사업소 (053-638-9256) 예천군청 재난관리과 (054-650-655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